예 산 총 칙

2018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44,055,455	10,321,664
일반회계		323,745,205	9,712,356
특별회계		20,310,250	609,308
	기타특별회계	20,310,250	609,308
	상수도특별회계	7,536,963	226,109
	자활기금특별회계	902,805	27,084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984,362	29,531
	기차마을사업특별회계	6,331,003	189,930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49,456	1,484
	장기미집행시설특별회계	242,400	7,272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4,263,261	127,898

- 제 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 세출예산"과 같다.
-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804,400천원으로 한다.
- 제 4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87억원으로 한다.
-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다음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 (1)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 (2)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 (3) 재해대책 및 복구비
 - (4) 동일부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